

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319328 판결 [차량매매대금 등 반환청구의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림 담당변호사 조강현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15.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3102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7,471,900원 및 그 중 1,900만 원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매매업, 할부금융 알선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2019. 6. 26.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의 저금리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위 자동차의 매수대금 및 그 이전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9. 8. 16.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성능보증기간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주행거리 2,000km 이내, 보증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이고, 성능보증범위에는 ‘실린더헤드/블록 및 그 내부 부품’도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인젝터 교환이나 터보차저 교환 등 차량 엔진의 수리와 관련하여 총 707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 손상이 있어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위 차량 엔진의 손상은 이 사건 자동차의 통상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는 객관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를 위해 지출한 대금 2,100만 원의 반환 및 차량수리비 707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주위적 청구원인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과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및 계약해제

1) 관련 법리

특정물 매매에 있어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제575조 제1항).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등 참조). 한편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으로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나(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으로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등 참조), 하자담보의 효과인 손해배상에는 확대손해의 배상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8호증, 을 제1, 3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엔진 손상 등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전 소유자였던 C는 2019. 5. 24. ‘차량 속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주행 중 경고등이 점등되는 등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F 수리센터에 입고하였고, 담당정비사는 ‘차량 엔진 중 3번 실린더 블록에 손상이 있어 엔진오일이 과다 유입되었고, 또 터보 임펠러 손상으로 인하여 엔진 내부에 쇳가루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엔진 교환 및 터보 교환이 요망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는 특별한 수리 없이 2019. 5. 30. F 수리센터에서 출고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최종 인도받은 2019. 8. 16.까지 차량 엔진 등의 손상에 대하여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게 교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차량 엔진의 교환, 수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점검 작업 시 엔진 구성품을 탈거하여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 점검방식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하였기 때문에 차량 엔진 등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9. 8. 22. 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단순 수리 이력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수리한 것인지를 묻자, 피고는 “일반 도색과 관련하여 수리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원고가 2019. 8. 24. 피고 측에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진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오토스탑 기능으로 인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나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문제가 발생한 2019. 8.

24.경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오히려 앞서 인정한 ①, ② 사정까지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수리와 관련하여 처음 자동차 점검을 받은 시점인 2019. 10. 16. 무렵 비로소 위 차량 엔진의 손상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차량 엔진의 손상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자동차의 2020. 3. 22. 기준 차량가액은 2,068만 원이고, F 수리센터가 발급한 견적서에 의하면, 차량 엔진 손상 등을 교체 수리하기 위해서는 약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교체 수리로 인해 예상되는 감가상각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기간이 끝난 중고외제차를 수리할 시 정식외제차 수리센터가 아닌 사인이 운영하는 외제차 전용공업사에서 OEM이나 재생부품을 이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중고외제차의 거래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경제적 수리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경험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경험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인젝터호스교환 하자를 인지한 2019. 8. 16.경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20. 2. 19.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위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다(민법 제582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수리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자동차 점검을 받은 2019. 10. 16. 무렵 비로소 차량 엔진의 손상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20.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및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0.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입차량의 계약특성상 양수인은 차량을 인수 후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인지 후 계약을 진행한다. 매매업자 양도인은 향후 차량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양수인은 차량보증에 관하여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보증기간 이내에 보증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여 추가하였는데, 원고가 위 보증기간이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하자과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권리와 이 사건 책임보험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권리는 그 발생원인 및 근거와 내용을 달리 하는 별개의 것인 점, ②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자필로 추가 기재된 부분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객관적 하자' 또는 '육안상 쉽게 확인이 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피고의 책임까지도 면책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위 책임보험의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책임보험의 성능보증기간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하자를 인식하였음에도 수리를 미루어왔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책임보험의 성능보증기간 중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하자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2019. 10. 16. 무렵에야 비로소 위 차량 엔진의 손상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

1)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가액이 1,280만 원인 것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대금 1,900만 원, 이전비 125만 원 및

성능보험비 174,900원 등 합계 20,401,9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2019. 8. 15. 총 2,100만 원의 할부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2019. 8. 16. 원고에게 할부 잔금 598,100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20,401,900원(= 2,100만 원 - 598,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수리 등을 위하여 총 707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위 이전비 125만 원 및 성능보험비 174,9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신뢰하고서 원고가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수리비 707만 원은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7,471,900원[= 원상회복금 1,900만 원 + 손해배상금 8,494,900원(= 이전비 125만 원 + 성능보험비 174,900원 + 수리비 707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83조의 취지는, 매도인은 민법 제583조에서 명시한 규정들에 터 잡아 이미 지급받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 하자 없는 물건의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서 수령한 목적물이 있다면 원상회복의무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쌍방 당사자의 의무는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동일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반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민법 제549조 참조) 이들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위 대법원 92다259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계약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인 피고의 차량가격 1,900만 원 반환의무가 매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가 반환할 위 금전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7,471,900원 및 그 중 원상회복금인 차량가격 1,900만 원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 기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금액 27,471,900원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인도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549조, 제536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참조),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위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위 27,471,900원

반환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27,471,900원 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그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천, 판사 김민지, 판사 안정현

별지

목 록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명: D

차종: 승용 중형

용도: 자가용

형식 및 연식: 8U 2014

차대번호: H

원동기형식: CFF

최초 등록일: 2014. 1. 2. 끝.

